

제 451호

1974.7.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편집 : 문화정보실장 김경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소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 조 례

- 제 859 호 서울특별시 최후상이용사소유의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 3
- 제 860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편직제중개정조례 ..... 3
- 제 861 호 서울특별시주택개발촉진사업시행조례 ..... 4
- 제 862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 9
- 제 863 호 서울특별시지정분화지역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 33

## ◎ 규 칙

- 제 1376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편직제중개정규칙 ..... 34
- 제 1377 호 서울특별시농지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 ..... 34
- 제 1378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3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1379 호	서울특별시급수조폐시행규칙중개정 규칙	36
◎	고 시		
	제 81 호	도시계획시설(소로)결정및지적승인	42
	제 8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일부변경승인	44
	제 83 호	비료판매영업등록	45
◎	공 고		
	제 121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및환지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45
	제 122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변경 및 대체지정공고	46
◎	사 명		47

**조 례**

서울특별시 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  
시립부속유사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산산의 처분계획에 관한 조례를 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59 호

서울특별시 최후상이용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자동산의  
처분계획에 관한 조례를 제정조례

서울특별시 최후상이용사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산의 처분계획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총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대방동 42의 84 소재 최후상이용사  
소유 토지 \* 및 서울특별시 동  
대방동 42의 4 동 501호 13 소재  
최후상이용사 소유 토지를 \* 을 상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  
시립부속유사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산산의 처분계획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60 호

서울특별시립부속사업장  
설치조례를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부속사업장 설치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서울특별시립 부속  
사업장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립 부속사업장 설치조례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을 같은 부속사업장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함의  
부속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 3 조 총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대방동 42의 84 소재 최후상이용사  
소유 토지 \* 및 서울특별시 동  
대방동 42의 4 동 501호 13 소재  
최후상이용사 소유 토지를 \* 을 상입한다.

3. 구짜차량 및 차량 부속시설소재, 작업장 또는 작업도로
5. 각종부속시설의 계획 및 설치

6. 기타 부녀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 5조중 제목 「수탁보호동」을 「수강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 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도의 수강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1. 수강료: 월 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제 861 호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시행조례

제 1조 (적용) 건설부 고시제 470 호 (1973.12.31)로 결정 고시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건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양여받은 토지의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하나의 독립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②전항의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은 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조 (사업비)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여된 지구내 국공유지의 분양수입과 제비지 배각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보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한다.

제 4조 (사업범위등) 재개발사업은 시행자 부담으로 지구내 도로와

하수도 시설 및 녹지시설등의 도시계획시설과 택지를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비용사용범위등)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양여된 국공유재산 배각대금과 이에 따른 새개발 사업시행으로 수입된 금액은 지구내 공공시설과 택지조성 또는 이주 보조비 (보상비) 등에 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6 조 (중전토지) 관리처분 계획의 표준이 될 중전토지의 각필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며 별도로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검한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7 조 (연고권)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지구내 국공유지에 1970.6.20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을 축조하고 사는 점유연고권은 인정한다. ②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재된 것은 지적공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것은 시장이 조사한 면적으로 하되

동당 50평을 한도로 인정한다. 다만, 설립된 학교, 교회 기타 종교적 제전에 사용되는 건물, 구호시설등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물과 합법적으로 추진 가능한 양호한 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전세입자에 대한 면적은 건물주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 8 조 (지장물 보상기준등) ① 공공시설 및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유허가건물 및 지장물은 지정할 이 전 보상의를 지불한다.

② 공공시설에 지속되는 무허가건물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치에 의거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서민아파트 또는 정착지를 제공 입주하게 한다.

제 9 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환지계획 및 토지분할계획을 막고 토지소유자 또는 연고권자는 환지 또는 분양지를 유적관리하의와 하되 관리소홀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는 시장이 배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 ( 증명 및 분할 ) 사업시행  
기진중 토지에 대한 제반증명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며 환지 및  
분양지의 분할 및 합병은 공공지  
획에 의한 것 외에는 소유자 및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  
한다.

다만, 분양자의 분양신청은 분양  
토지대금 완납후에 신청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 11 조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① 사  
업시행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주의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8 조 내지 제 54 조 규정에 의  
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  
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  
지위치 근처에 지정한다.

② 공공용지의 배치전속계획 및 제  
비지 지정등으로 인하여 원위치  
근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 규정에 의한 위치에 대동하

다코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용에 공  
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의 피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④ 공공부리에 기여되는 사업주체가  
환지면적의 합으로 사업부적달성이  
어쩔다는 이유로 승환지불 신청할  
때의는 특별승환지를 교부할 수 있  
으며, 승환지 가격은 감전으로 징수  
한다.

⑤ 협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50 평  
이상으로 하여 이해에는 수인의  
연고권자를 1 필지로 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⑥ 부부의 단독주택지를 분양할때에는  
동당 피지면적을 27 평이상으로  
한다.

⑦ 해발 100 미터이상 지구, 녹지  
공공용지 및 도로용지는 분양에서

제외되며 별도 대책에 의거 처리한다.

⑧이 조항에서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제 12 조 (부별지의 환지계획) 종전 토지 면적이 과소하여 환지 교부가 곤란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 13 조 (환지 및 분양예정지 지정)

①사유토지는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국공유 토지는 사유토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보한후 잔여면적은 분양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및 분양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연고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택지조성) ①택지조성은 여건에 따라 시비 또는 주민부담으로 실시한다.

②입지조성이 좋고 도시경관상 중요시되는 지구는 점유주민을 이주시키고 보다 격조 높은 주택가

형상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5 조 (불량주택철거 및 주택건설)

①저구내 불량주택은 전면 철거한다. 다만, 건축법에 부합되고 도시이용 계획에 저촉되지 않은 건물은 예외로 한다.

②주택건설은 원칙적으로 구획 및 건축계획에 맞는 4가구 이상 인 계획된 협동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 16 조 (청산기준)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점단가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 17 조 (환지 및 분양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전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후 지체없이 환지 및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완료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환지 및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업을 토지소유자 및 연고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대지동의 '관리처분') 사업경비에 상당할 대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사업종료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환지증명서 및 분양지조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분양연고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대리인선정) 토지소유자가 시행정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 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1 조 (토지소유자등의 명의변경)

①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 및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22 조 (제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토지는 구역내 토지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불수용당하였거나 지장물을 철거당한 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배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2. 계약체결은 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소정기일내에 시가 지시하는 시범설치도에 의한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
4.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계약체결되었음이 판명될 때.

제 23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를 여기에 공포한다.

1974. 7. 1

서울특별시 시장

◎서울특별시조례 제 862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선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장의 위치등) 서울특별시 부류별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한다)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 3 조 (거래품목) ①도매시장에서 거래할수있는 농수산물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 채소류, 과일류, 채소저림류,

전채소 및 전과실류

수산물: 생선어게류, 상해조류, 어반류,

전어게류, 열진어게류, 열잡어

게류, 간해조류

수산물: 조수육류 및 동부산철

②도매시장은 부류별 품목중 허가된 품목만을 거래하여야 한다.

제 4 조 (시설기금운용특별회계)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매시장에서 수수하는 시수로 전부와 수수료의 100분의 20 을 시설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편회해년도마다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시설기금의 전부자는 농수산물감관 이 시달한 기본지침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1.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시장

2. 운영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우수한 시장

3. 시설개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4. 기타 제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③시설기금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그 개선목적에만 투자되어야 한다.

제 5 조 (개장시간)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관계사업자의 자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경매사, 중매인, 중매대리인 및 매매참가인등(이하 "관계사업자라한다.)이 될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2.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관계사업자의허가, 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대행자와 동일직원
5. 당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및 재력을 가지지 못한자

제 7 조 (점업의금지) ①도매시장의 대행자와 동일직원은 그배우자, 가족 동업자의 명의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지역내에서 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점업할수 없다.

②중매인과 중매인인 법인인경우 그

입직원은 배우자, 가족동업자의 명의로 도매시장 개설지역내에서 출하주의 업무를 점업하지 못한다.

제 8 조 (휴업일)도매시장의 대행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얻어 휴업을 정할수 있다.

제 2 장 도매시장관계사업자  
제 1 절 대행자

제 9 조 (보증금액) ①시장은 대행자가 납부하여야할 기본보증금을 부류별로 다음 금액의 범위내에서 도매시장 대행자 허가시에 이를 정한다.

다만, 대행자가 자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시장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정과부: 1,000천원 이상 3,000천원 이하
- 수산물부: 2,000천원 이상 3,000천원 이하
- 축산물부: 2,000천원 이상 3,000천원 이하

②전항의 보증금에서 사용료, 수수료 및 대행자에게 판매 또는 판매위탁을 한자의 재권이 변경된때에는 그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증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증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갈음할수 있으며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은 액면가보다  
하의 값가가 액면가이하 일 경우에는  
싯가에 의한다.

④보증금은 대행자의 자격상실일로  
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를 반  
환한다.

제 10 조 (경매사등록) ①대행자는 서울  
특별시에서 등록된 경매사가 아니면  
이를 경매사로 고용할 수 없다.

②대행자가 경매사등록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경매  
업무종사 경력증명서와 별지제 1 호  
서식에 의한 경매사 등록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경매사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한 등록 접수일로부터 30일이  
내에 경매사등록증(별지제 1 호의 2)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경매사 등록을 받고자 하는자의  
충실효유무의 인정은 전형방법으로  
정한다.

⑤경매사는 다음 자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재인과의 암거래 허용
2. 중재인들의 거래상 담합방조  
또는 묵인
3. 파주 또는 중재인과의 어느일  
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
4. 부정거래를 촉하는 행위

⑥경매사가 전항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등록자  
각 기준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는 등록을 취소한다.

제 11 조 (경매사의 등록갱신) ①경매사  
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록  
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만 3 년으로 한다.

③등록갱신 신청은 대행자가 유효  
기간 만료일전 60일부터 30일사이  
에 등록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전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  
은 등록갱신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12 조 ( 동류증의 휴대 ) 경매사는 경매시 동류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 2 절 중매인

제 13 조 ( 중매인허가 ) ① 도매시장에서 중매업무를 하고자 하는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대행자 추천서와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중매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매인의 대리인을 둘수있다.

제 14 조 ( 중매인수 ) 도매시장에서 대행자가 확보하여야할 부류별 최소한의 중매인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형성의 성질에 비추어 전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을 승인할언어 감할수 있다.

- 청과부 : 100 명
- 수산물 : 100 명

축산부 : 100 명

제 15 조 ( 중매인의 거래량 ) 부류별 일간 중매인 거래량의 최저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청과부 : 1,000 천원
- 수산물 : 2,000 천원
- 축산부 : 2,000 천원

제 16 조 ( 중매인 수수료 ) ① 중매인이 받을수 있는 중매수수료율은 경매가격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중매인이 허가시에 이를 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의 수수료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 17 조 ( 담보의 제공 ) 허가를 받은 중매인은 대행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이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대행자와 협약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 담보금액 ) ① 중매인이 제공하여야할 담보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 청과부 : 1,000 천원
- 수산물 : 2,000 천원
- 축산부 : 2,000 천원

② 담보물은 현금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제19조 (중매업무와 허가취소) ① 중매인에게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중매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3조 제1항의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1개월 이상 그 업무를 휴업한 경우
3. 중매인 거래고의 최저 한도액에 미달한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중매업무 이외의 도매시장관계 업무를 하거나 출하주의 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
6. 법령이나 기타규정을 위반하였

을 경우

7.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도매시장 밖에서 매수판매했을 경우

8. 중매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명칭변경등의 제출) 중매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없이 그 사실을 대행자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매업무를 개시, 휴업 또는 재개시할 때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중매인 허가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제21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중매인은 매분기마다 인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중매인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중매인하주 감리금의 지급)

① 대행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중매인 완납감리금과 생산자의 출하감리금을 저당할 수 있다.

② 권항의 중매인 감리금과 생산자

장학금의 합계금액은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 1항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대행자는 별지제 4호 서식의 장학금 지급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 (산지증대인의 직접출하) 생산지에서 경매된 물품은 생산지 증대인이 직접 출하하여야 한다.

제 24조 (증대인 업무구역) 증대인은 증대업무가 허가된 시장 및 장소 외에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증대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 25조 (증대인과 소매인조합) ①증대인 또는 소매인이 조합을 조직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합규약과 조합원 및 임원의 명단을 첨부하여 대행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매업자 조합은 시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증대인 조합과 소매인 조합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개편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26조 (소매인의 출입제한) 도매시장에 출입할 수 있는 소매인은 소매인 조합에 가입한 자에 한한다. 다만 소매인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행자가 따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절 매매참가인

제 27조 (매매참가인의 승인) ①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 부류별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5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승인신청서를 대행자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 (매매참가인의 승인취소) 매매참가인이 제 6조 제 1호, 제 4호 및 제 5호에 해당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력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절 부속영업인

제 29조 (부속영업의허가) ①시장은 시장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및 시장시

실내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1. 음식점업
- 2. 이 용 업
- 3. 약 국
- 4. 기 타

②전환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대행자의 추천서와 함께 별지 제 6 호 서식의 부속영업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부속영업의 규제) 시장은 시장업무의 부속영업 행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부속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수있다.

제 3 장 시장시설의 사용

제 31 조 (시설사용의 허가) 중매인 및 부속영업인이 사용할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기타 사용조건은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시설의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수 없다.

제 33 조 (원상변경의금지) 사용자는 시장

의 승인없이 시장시설의 건축, 개조 또는 형태를 변경할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 조 (시설반환) 사용자가 사망, 폐업, 퇴역 임무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 하였을때에는 본인 상속인 정산인 대리인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용하던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35 조 (시설사용의 규제) ①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의 제한 및 결격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업무의 감독 권계의 계약 교통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2. 시장질서 또는 공공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 3. 시설의 사용에 있어 허가한 목적 기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때

4. 시설목적이 변경되어 그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5. 고의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혹은 파손하였을때

6. 사용료 기타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때

7. 법령또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위반하였을때

②건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법령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제 36 조 (보수명령) 시장은 시설을 손상하게 한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수 있다.

제 37 조 (시장의 청소) ①시장의 청소는 대행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청소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의 철거를 명할수 있다.

제 38 조 (대행자의 수수료납부) 대행자는 법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수료를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청과부 : 매상고의 1,000분의 2

수산물 : 매상고의 1,000분의 2

축산부 : 매상고의 1,000분의 1

제 39 조 (시설사용료의납부) ①시장은

대행자 중매인 부속영업인의 사용료를 다함의 범위내에서 월별로 징수한다. 다만 개설자 시설에 한하여 건조의 수수료율을 합산한 금액이 도매거래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지사용료 : 1명방 미터당 215 원

중매인 점포사용료 : 1명방 미터당 130 원

사무실 및 기타시설물 : 1명방 미터당 60 원

냉동시설사용료 : 1명방 미터당 210 원

②시장에서 사용하는 견력 수도 전화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도매 시장의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매매거래방법 및 결제방법

제 40 조 (입하수량 등의 공표) ①대행자는 매일 판매시간까지 입하량 입하예상량, 상장할 물품의 수량 및 살지 그리고 건일예 거래된 주요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거래시간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1 조 (시장의 거래금지) ①대행자는 시장의에서 도매시장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건일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행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자 성명 및 주소
2. 지정장소 및 기간
3. 취급할 물품 종류
4. 설치이유

제 42 조 (반입물품의 제한) ①시장은 시장에 반입한 물품중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

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의 중지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건일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3 조 (거래의 단위) ①매매거래의 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중량으로 거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대행자는 건일 단서에 의한 단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규격화) 대행자는 출하된 물품을 선별하고 규격화하여 이를 상장하여야 한다.

제 45 조 (차별취급금의 금지 등) ①대행자는 시장업무에 관련하여 출하지 중매인 및 매매참가인에게 부당한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행자가 거래물품의 판매위탁을 받은 경우 영업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제 46 조 (시장출입자표지) ①시장에 출입하는 관계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여

아 한다.

②견항의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일정한 입장장으로 시에 갈 수 있다.

제 47 조 (매수자의 제한) ①시장은 중매인과 매매참가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매매거부의 정지, 입찰의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 기타 시장에 관하여 발생한 금전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거래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매수한 물품의 대금 또는 경산금의 지불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규정한 제반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5. 시장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때
6.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중매인의 대리인이 견항의 경우에

해당하였을 때에도 중매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48 조 (매매방법) 도매시장에서 행하는 매매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이 외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가매매 또는 상대매매를 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입찰이 지연되는 경우
3.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그 잔존품이 생긴 경우
4. 특정물품
5. 기타 가격정책상 필요한 경우

제 49 조 (상대매매 또는 정가매매방법의 승인신청) 전조 단서의 매매방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대행자는 별지 제 7 호서식의 ㉠○매매방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 (수탁판매원칙의 예외) ①대행자는 도매업무에 있어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제산으로 매매를 행할 수 있다.

<p>1. 수확관포가 이력용 경우</p> <p>2. 의행인과 승의인 또는 복의참가 인간의 계약의 따라 단품확보가 필요한 경우</p> <p>3. 봉급의 안정을 위하여 보좌 또는 저장한 경우</p>	<p>①전항의 경우의 차손함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액수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자가계산판매를 하고자 하는 대행자는 별지 제 8 호서식의 자기계산판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53 조 (소액인조합의 확인) ①승의인은 서장이 승인한 소액인 조합이 조직되어 있을 때에는 당초 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 10 호서식의 발행인수 확인증을 소액인으로부터 받고 발행증과 발행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행인수 확인증은 대행자가 보관한다.</p>
<p>제 51 조 (발행증발급) ①대행자는 경락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 9 호서식의 발행증을 액수인에게 발급하고 발행을 인도하여야 한다.</p>	<p>제 54 조 (부정관포의 대한 처분)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당한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발행증은 대행자가 사건의 시장의 경인을 얻어 발급하되 따로 발급의장을 비치 운영하여야 하며 발행증의 유효기간은 당일도 한다.</p>	<p>제 55 조 (의금정산) 복의대담은 복의가 정립된 경우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낙승물품의 복의시액은 입까지 계산서를 송부하고 이를 위탁자까지 지불하여야 하며, 지불거일이 대하여 위탁자와 부약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52 조 (복의물품의 인수) ①복의가 정립하였을 때에는 액수인은 즉시 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액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복의물품의 인수를 퇴각한 하였을 때에는 의행자는 액수인의 비용으로 그 물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회고하지 아니하고 복의물 회고하고 다시 판매할 수 있다.</p>	<p>제 56 조 (판매의금의 감액금지) 대행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매된 판매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다만, 경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p>

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 조 (미수채권의 회수) ①대행자  
의 중매인과 매매참가인에 대한 미  
수채권은 영업규정에 정한 외상거래  
한도에 불구하고 7일 이내에 회수하  
여야 한다.

②전항의 미수채권회수기간후 다시  
7일을 경과하여도 회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행자는 중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의 거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③소정기일 15일이 경과되면 대행  
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법적인 수속  
을 할 수 있다.

제 58 조 (위탁수수료 및 다른 보상수  
수의 금지) ①대행자가 판매위탁자  
로 하여금 수납할 위탁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

- 청과부 : 판매가격의 100분의 7.0
- 수산물 : 판매가격의 100분의 6.0
- 축산부 : 판매가격의 100분의 2.5

②대행자는 전항의 위탁수수료 이외  
에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 59 조 (매매참가인의 외상거래금지)  
매매참가인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행자와 따로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장 감 독

제 60 조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행자, 관계사업자 및  
부속영업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지시할 수 있다.

제 61 조 (검사) 검사공무원은 상표를  
제시하고 도매시장에 판매되는 재산  
장부, 서류, 물건 기타 필요한 내용  
을 검사할 수 있다.

제 62 조 (감독처분) ①시장은 대행자,  
관계사업자 및 부속영업인이 이 조  
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 승인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  
내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행자, 관계사업자 및 부  
속영업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이나 조치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이내  
의 범위내에서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자, 관계사업자  
및 부속영업인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내로 이전개시하는 날로부터 이전  
부터 시행한다. 완료후 초기 1년간은 제 38 조의
- ②(경과조치)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5  
양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허가받은 로 한다.  
중매인, 등록된 경매사 허가된 부속 다만 이전을 개시하기전까지의 대  
영업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행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이전의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요율인 1,000분의 5를 계속적용한다.
- ③(동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 ④(폐기구별) 서울특별시조례 제 93  
시장 수산부본장 및 청과부본장의 호(1956.8.14) 서울특별시 중앙  
대행수수료는 한국농장주식회사의 구 도매시장 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lt;별표&gt;

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대 지	건 평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본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주로 2가 16 번지	12,138.2	3,553.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본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주로 2가 16 번지	11,132.2	8,060.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본장	서울특별시성동구 마창동 220 번지	14,416.2	6,876.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동포본장	서울특별시관악구 노량진동 13-8	47,142.2	28,274.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절과부, 수산부 용산본장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로 3가 16-9	39,388.2	18,700.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 영동포본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독산동 139 번지	10,728.2	3,123.2

<별지 제 1호서식>

경매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주민등록번호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매사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장귀하 신청인

①

구비서류

- 1. 이력서 1봉
- 2. 추천서 1봉
- 3. 신원증명서 1봉
- 4. 병적확인서 2봉
- 5. 신체검사서 1봉
- 6. 국세 및 시세증명 각 1봉
- 7. 경력증명서 1봉
- 8. 사진 2매

<별지제 1호의 2>

경매사등록증

서울특별시

사  
건

중사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부 강

거래종류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등록일자 : 197 . . .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 20 조에 규정된 경매사등록을  
취하였음을 증명함.

197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인

100mmX70mm

<별지 제 2호서식>

증매인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1) 본 적			
	(2) 주 소			
	(3) 소 속			
	(4) 주민등록번호	(5) 성명	(6) 19 .. .. 생	
	(7) 업무구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 13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 . . . .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신청인

인

구비서류	수입인지
1. 서약서 1봉	없음
2. 인감증명서 1봉	
3. 이력서 1봉	
4. 추천서 (업무대행회사) 1봉	
5. 신원증명서 1봉	
6. 별적확인서 1봉	
7. 국제 및 시세 완납증명 각 1봉	
8. 계약서사본 1봉	
9. 사 진 1봉	
10. 신채검사서 (채용) 2배	



별지 제 3 호 서식			
중 매 인 영 업 보 고 서			
중매인가번호	계	호	성 명
시 장 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거 래 품 목			
거 래 내 용			
구 분 순 별	거 래 량 ( )	거 래 액 ( 원 )	수수료수수액 ( 원 )
상 ( 1 - 10 ) 순			
중 ( 11 - 20 ) 순			
하 ( 21 - 말일 ) 순			
합 계			
위와 같이 년 월 일 영업실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1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197 . . .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
중 매 인.			②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별지 제 4 호 서식	
<u>장려금 지급 승인 신청서</u>	
신청시장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대행자회사및대표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상총취액	금 원정
지급비율	1,000분의
지급액	금 원정
지급대상	외명 (별지 지급대상차 내역참조)
지급기간	자 197 년 월 지 197 년 월 ( 월분 )
<p>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 22 조에 의거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첨부. 지급기간 거래내역표 (총괄)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197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주식회사. 대표이사 ㉠</p> <p>서울특별시 시장 귀하</p>	



별지 제 6 호 서식

부 속 영 업 허 가

신	본 적	시	구	동	읍	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청	소속시장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 품 목 : )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19 . . . .
인	영업구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매규정 제 29 조 제 2 항에 의거 별첨서류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

신 청 인.

㉑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 1. 이 령 서 1 통
- 2. 추천자 ( 대행자 ) 1 통
- 3. 신 원 증 명 1 통
- 4. 병적확인서 2 통
- 5. 채용신체검사서 1 통
- 6. 재산명가조계 1 통
- 7. 서 약 서 1 통
- 8. 국세 및 시세 각 1 통

별지 제 7 호 서식

○ ○ 매 매 상 별 승 인 신 청 서

대 행 자	주 소	시 구 동 리 번거 도 군 면 리 번거			
	상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장			
	성 명		주말등록 번호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승인신청사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 . . . .

신청인



서울특별시 장 귀 하

별지제 8 호서식

자기계산매매승인신청서

대 행 자	주 소	시 구 동 번지		
	상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장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승인신청사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 . . . .

신청인

①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반 출 증

반출: 영업장소

입자: 상 호

성 명

영업감찰번호

주민등록번호

반출상황	품목	단위	수량	금액	비고
				원	

반출년월일 197 년 월 일

본증 유효는 당일에 한함.

위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 시장에게  
반출하는 물품임을 증명함.

197 년 월 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 시장

서울특별시 검인

(신용용지 134mm x 190mm 복사)

별지 제 10 호서식			
물 품 인 수 확 인 증			
반 출 업 자	영업장소		
	상 호	영업감찰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반 출 상 황	품 명 구 분		금 액
			원
			원
			원
출고년월일 197 년 월 일			
상기 사실을 확인함.  197 년 월 일  확인조함명 확인자 ○ ○ 조 함 장 ㉞			
취급자인			
(신문용지 134mm×190mm 복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1974. 7. 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 863 호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으로  
지정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동령건  
답조치 (이하 "건답조치"라한다)

제 16 조 제 1 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불균일과 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불균일과세대상) 건조의 불  
균일과세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문화재 보호법 제 7 조, 제 9 조  
및 제 10 조와 서울특별시지방문  
화재 보호조치 제 16 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가옥 및 그 대지  
2. 문화재보호법 제 11 조와 서울특  
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중 건답조치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토지

제 3 조 (세율) 건조의 건물 및 토  
지에 대하여는 건답조치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 188 조 세율을  
적용한다.

제 4 조 (사무처리위원) 제 2 조의 규  
정의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  
람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5월 1일 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7. 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76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직부) 사업관은 부녀자의 지도제공과 부녀복지상담 및 가정복지사업에 관한 사항과 무료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농지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7. 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77 호

서울특별시농지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농지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업무부장"을 "사무부장"으로 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림기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들 기취감독한다.

제 3 조 (조직) ① 사업소에 서무계와 사업계를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 사업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② 사업소장 직별분감사무는 다음과 같고 같다.

1. 서무계

가. 문서, 관인 및 기밀

나. 인사, 복무, 급여

다. 예산, 회계 및 용도

라. 물품장비의 관리

마. 소나타본회의주관에 속하지아니하는사항

2. 사업제

가. 사방조림선제 및 사공감독

나. 녹지대 가로수시설 및 유지관리

다. 노면정개지 미화선제 및 시공감독

라. 시공지 사후관리

제 4 조를 삭제하고 제 5 조를 제 4 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7. 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378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조금지급조  
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조  
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건  
물은 조례 제 2 조 제 1 호의 규  
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이어야 한다.

제 4 조중 " 10 만 원" 을 " 15 만 원"  
으로 한다.

제 8 조 제 2 호중 " 주민등록호본" 을  
" 주민등록등본" 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이전에  
제 4 조 및 제 7 조의 규정이 적용  
될 거방침이 결정되도 시행당시까지  
정비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조금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  
로 지급한다.

서울특별시갑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7. 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 제 1379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의 2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 12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인정소점은 가사용에 있어서는 인구 매 1인에 대하여 월 4㎡에 수요권을 병당 0.2㎡를 가산해서 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미만인 량에 대하여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중 "전월의" 를 "1전 1개

2. 영업용 제 1 종

월"로 하고 동조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급수사용실적이 없는 공용급수권 제 3 조제 3 항, 제 3 조의 2, 제 4 조 및 제 6 조제 3 항 중 "시장"을 각각 "관할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제 1 호중 제 2 호 내지 제 4 호와 제 5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제 1 호 급수종별구분표에 의거 급수업종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1974년 8월 정수분부터 적용한다.

호	업 종	적 요
1	극 장	
2	호 텔, 여 관	
3	은행, 본지점	
4	식당, 음식점	
5	병 원	
6	요정, 요리점	한식, 일식, 중국식, 양식요리, 카바레, 야, 클럽, 피관동

호	업종	적요
7	백화점	유행시설이 있는 업체
8	인쇄소, 출판사	
9	다방, 빙과점	새탁기제시설을 보유한 업체
10	한증막	
11	새탁소	
12	이발관	
13	주유소, 주차장, 세차장	
14	꽃집, 식부업	
15	사설학술강습소, 학원	
16	보빙장	
17	예식장	
18	양조업, 제분업	
19	제당업, 제빙업	이 규칙 갈수증별구분표 각항에 명시된 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가 주택건물 이 아닌 4층이상의 건축물(지하층포함) 1. 위에 제기한 업종의에 영업용도나 중 사원 및 내재용으로 월 60 백정도 갈수가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한 갈수 2. 영업용계 2층에 해당하는 2개이상의 업 체가 단일양수기를 경유하여 갈수를 사용할때
20	청량음료제조업	
21	제약업	
22	도살장	
23	업색소	
24	실내스케이트장, 수영장	
25	풀장(개인풀장포함)	
26	칼라현상소, 사진관	
27	식도품제조 및 가공업	
28	빈딩	
29	기타	

## 3. 영업용 제 2종

호	업 종	적 요
1	세탁소	영업용제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사립대학부속병원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4	당구장	
5	주점	선술집 및 이와 유사한 소규모 주류판매업
6	인쇄소	영업용제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7	간이음식점	라면, 국수, 망류등 간이식사
8	정육점	
9	여인숙 및 하숙업	
10	미장원	
11	사부실	
12	기원	
13	철물점, 목재상 및 물역상	
14	방앗간	
15	기타	영업용 제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및 공업용 급수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체로서 영업용도 또는 종사원용으로 급수물 사용하는 업체

4. **공업종**: 계조가 공업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월평균 100㎡이상 사용  
하는 다음에 계기하는 업소에 대한 급수

호	업종	적요
1	방직 및 직물가공업	
2	기계기구제조공업	
3	유지공업	
4	주철 및 제철공업	
5	제직공업	
6	고무제품제조업	
7	철유공업	

제 5 호서식					( 전 면 )	
○○○ 구 수도 사업소					수도제량기검침카드	
급수종별			소재지	종 류 가 번 지 호		
수전번호			소유자	사용자		
검 침 일			지 침 수	사 용 량	검 침 원 성 명	비 고
년	월	일				
73						
74						
※ 수도요금을 내실때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시고 5년간 보관하십시오.						



「- 꼭 알아 두십시오 -」

검 칩 입 회

수도사업소직원이 귀택을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반드시 입 회하고 본 카드에 지침수 월사용량을 거입토록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 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소장실 00-0000 번으로 신고하여 주 십시오.

요 금 납 부

- 1. 상민은행본지점                      2. 서울시금고                      3. 0007 수도사업소
- 4. 수도사업소 담당직원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계 량 기 보 호

- 1. 계량기 위에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놓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2. 계량기보호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3. 겨울에는 양수기가 얼지 않도록 첫째, 알고동은 언제나 열어놓고 뒷고동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마니, 왕겨, 스티로폼 등으로 양수기를 보호하십시오.

카 드 보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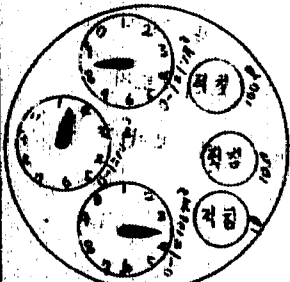
이 카드는 계량기가 있는 근처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고 이사하실 때에는 다음 분에게 인계하여 주십시오.

수 도 고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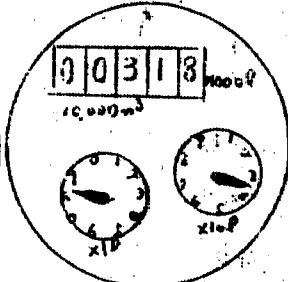
계량기를 지나가는 물이 수도고장이나 누수가 될 경우 수도요금은 수 요자가 부담하게 되오니 확인하시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해독식양수기보는법

지독식양수기 보는법



위 그림의 사용량은 318.0입니다.



위 그림의 사용량은 318.0입니다.

수도원월신고

민원신고 00-0000

요금문의

과장 1계 00-0000

과장 2계 00-0000

고장신고

공무 1계 00-0000

공무 2계 00-000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1호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구역중 열창지구  
구의 1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소로)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얏기 도시계획법  
가. 지구조서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  
설부고시제 123호(73.4.4)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향출장소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6. 22

서울특별시장

지 구 명	동 명	비 고
열 창 지 구	열 창 동, 양 화 동	
천 호 지 구	문 촌 동	

- (1) 서울도시계획도로확정조서별첨 별첨지도면표시와감음(도면생략)  
(2) 서울도시계획도로확정도면별첨 도면은서울특별시청및관향출장소에보관함

로 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결	중 결
	소로	2	1	8m	710m	열창동강변	열창동25-5앞
	"	"	2	"	600	" 산30-27	" 76-16
	"	"	3	"	160	" 산20-33	" 산24-1
	"	"	4	"	140	" 65	" 74
	"	"	5	"	240	" 53-1	" 산62-1
	"	"	6	"	270	" 86	" 104
	"	"	7	"	170	" 97-2	" 산82

구분	등급	부번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소로	2	8	8 m	330 m	양화동 53-1		양화동 산 3-4	
	소로	3	1	6 m	120	염창동 2-3		염창동 2-5	
	"	"	2	"	76	" 2-4		" 6-1	
	"	"	3	"	230	" 5-13		" 산 20-1	
	"	"	4	"	370	" 20-6		" 5-13	
	"	"	5	"	200	" 22-2		" 산 30-20	
	"	"	6	"	1,200	" 산 30-21		" 112-2	
	"	"	7	"	290	" 산 30-3		" 66-1	
	"	"	8	"	70	" 62-2		" 62-3	
	"	"	9	"		" 62-4		" 111-4	
	"	"	10	"	306	" 59-1		" 산 62-1	
	"	"	11	"	280	" 100-45		" 106-10	
	"	"	12	"	96	" 75-2		" 95-4	
	"	"	13	"	220	" 102-3		" 112-2	
	"	"	14	"	1,000	양화동 153-6		양화동 산 3-4	
친호지구 ( 제 8 공구 )									
구분	등급	부번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소	2	1	4 m	143.5 m	물촌동 433 입		물촌동 416 입	
	"	"	2	8	126	" 464-6 당		" 산 52 "	
	"	"	3		194	" 산 50 입		" 산 52 "	
	"	"	4	8	99	" 463-3 전		" 532-2 전	
	"	"	5	8	52	" 532-4 전		" 581-1 전	

구분	동명	유형	번호	축원	연장	기 정	총 정
	소	3	1	3	108	문촌동 423-1답	문촌동 433 입
	"	"	2	6	166	" 415 입	" 436 "
	"	"	3		108	" 416 입	" 416 "
	"	"	4		195	" 197 전	" 464-6 답
	"	"	5		197.5	" 476-2답	" 483-3 전
	"	"	6	6	111	" 497-2전	" 382-1 "
	"	"	7	6	641	" 424 답	" 479-2 "
	"	"	8		514	" 412 전	" 533 "

◎ 서울특별시고시제 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일부변경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지적을 다 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호(73. 4. 4)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6. 22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법령조서									
구분	종류	부별	번호	부원	연장	기 점	종 점	이 고	
기정	상토	3	37	12	1030	상도동 (면적 3-18)	상도동 (면적 3-35)	공단지공청제하 주어 일부전장	
변경	"	"	"	"	"	"	"		
<p>별첨 도면표시와 감용(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및공약구청에 보관</p> <p><b>○서울특별시고시제 83 호</b> 비로판적영업등록 다율과 같이 비로판적영업등록을 하였기 비로판속법 시행령 제 6 조</p> <p>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 다. 1974. 6. 24 서울특별시장</p>									
등록 번호	등록또는교 부년월일	판적 및 판적 주소	소재 지 소재 지	비 로 명	보증 금 비율	기타 규격			
1-1	등록 1974	1. 구 소 서울특별시종로5가243	2. 성 명 안 기 운	제 5 중 부 합 비 로 (역제비로) 일명: 부 살	질소 4 % 인산 4 % 가리 3 %	미량요소 각 종			
<p>유효기간: 1974.6.24 ~ 1977.6.2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공 고</div> <p><b>○서울특별시공고제 121 호</b>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및환지 계획일부변경을위한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 시흥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일부를 다율과 같이 변경하고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3 조</p> <p>제 11 항제 55 호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제 12 조, 제 34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율과 같이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 2 과와 영등포구청 시 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 다.</p>									

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될 것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  
 가. 사업계획변경조서

한다.

1974. 6. 25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점번호	폭	연장	위치	폭	연장	위치	
시흥지구	도로	8m	60m	독산동산 58-5 208-1	8m	43m	독산동산 58-5 208(나)	위치 변경

나. 공 랑 개 요

- 1) 사업명 ; 시흥토지구의정리사업
-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독산동 208-1 일대 ( 52, 53 구획 )
- 3) 변경조서 및 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구획정리 1 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변경 및 대체지정공고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변경사항 및 대체지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6. .

○ 서울특별시공고제 122 호

서울특별시장

1. 대 체 지 정

변 경 전					변 경 후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309	대신편물공업사	강용수	동대문구답십리 414	에타	309	대신편물공업(주)	강용수	동대문구답십리 474외6	에타

2. 변 경 지 정

변 경 전					변 경 후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613	법창물산주식회사	백석균	서대문구순화동 1-95	완구	613	법창물산사	백석균	마포구원석동 146	완구

사 령

○ 1974. 6.22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복구 군무를 명함.

손태환

○ 1974. 6.24

기획담당관실 기획행정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통계담당관실 통계조사제장에 보함.

동원담당관실 동원 1제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동원담당관실 동원 1제장에 보함.

회계과 회계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사회과 사회제장에 보함.

회계과 회계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김창신

이강훈

한동석

원성택

세정과 세관제장에 보함.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청소 1과 작업제장에 보함.

중구 지방행정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중구 청소과장에 보함.

인사과 인사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사무처 사무계장

직무대리에 보함.

법무담당관실 법무행정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사회과장에 보함.

용산구 지방행정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8호봉을 급함.

마포구 사회과장에 보함.

인사과 인사주

지방행정사무관에 보함.

이영진

이성준

박해림

김성관

신성우

김병택

2호봉을 급함.		6호봉을 급함.	
아포구 청소과장에 포함.		용산구 시민봉사실장에 포함.	
중 구 지방행정사	강우식	중로구 지방행정사	김병우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2호봉을 급함.	
중로구 사회과장에 포함.		중로구 청소과장에 포함.	
용산보건소 지방행정사	최동조	청소1과작업 지방행정사	이영규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4호봉을 급함.	
중로구 산업과장에 포함.		시민회관 관리과장에 포함.	
주택행정과 지방행정사	강성환	사회과사회 지방행정사	강대현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5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 운수과인사계장에 포함.		영동출장소 시민봉사실장에 포함.	
심북구 지방행정사	양승주	중청소과장 지방행정사	신대식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총무과 차량제장에 포함.	
3호봉을 급함.		중로구 지방행정사	이우택
성북구 주택과장에 포함.		시민과 문서통계제장에 포함.	
시장개발 지방행정사	김용희	마포구 지방행정사	이경배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사회과장 사무관	
3호봉을 급함.		새마을지도과 지도제장에 포함.	
서대문구 청소과장에 포함.		용산구 지방행정사	조성두
운수2과 지방행정사	하영기	산업과장 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시민과 문서관리제장에 포함.	
		중로구 지방행정사	이준호
		산업과장 사무관	
		양정과 양점제장에 포함.	



상 북 구 지방행정 사무과 과장 사무관	유 병 돈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산업과 과장 사무관	김 삼 봉
단속과 단속제장에 포함.		동대문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포함.	
용산구지민봉 사업장직무대리	이 홍 울	동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 민원봉사실장 사무관	신 기 현
공무원교육원 교학과 교무제장에 포함.		토목시험소 사무과장에 포함	
토목시험소 지방행정 사무과 과장 사무관	방 준 환	시 민 과 지방행정 문서관리과 과장 사무관	송 용 석
안전담당관실 관리제장에 포함.		인사과 교과제장에 포함.	
새 정 과 지방행정 새 원 과장 사무관	강 신 국	인 사 과 지방행정 교과과 과장 사무관	남 삼 수
용산구 산업과장에 포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내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사회과 과장 사무관	임 찬 호	총 무 과 지방행정 외전과 과장 사무관	김 승 경
동대문구 청소과장에 포함.		추무과 차량과장 겸직을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청소과 과장 사무관	신 병 순		
서대문구 산업과장에 포함.		○ 1974. 6. 25	
마 포 구 지방행정 청소과 과장 사무관	신 영 진		이 필 남
영등포구 산업과장에 포함.		지방행정수사보시보에 임함.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 지도과 과장 사무관	엄 진 섭	1호봉을 급함.	
관악구 세무 2과장에 포함.		시민과 근무를 명함.	
시 민 과 지방행정 문서홍보과 과장 사무관	정 만 호		임 의 민
운동장 운영담당관에 포함.		지방행정수사보시보에 임함.	
영 등 포 구 지방행정 산업과 과장 사무관	유 문 호	1호봉을 급함.	
성북보건소 위생과장에 포함.		시정개발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행정 세무 2과장 사무관	김 재 원		김 명 수
도봉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포함.		지방행정수사보시보에 임함.	
중 료 구 지방행정 청소과 과장 사무관	김 기 동	1호봉을 급함.	
관악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포함.		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p>고 갑 무</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안전담당관실 근무를 명함.</p>	<p>유 암</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p>
<p>조 수 호</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시민과 근무를 명함.</p>	<p>최 집 규</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세정과 근무를 명함.</p>
<p>나 동 운</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개발 1 과 근무를 명함.</p>	<p>이 수 경</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p>
<p>최 병 현</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시정개발담당관실 근무를 명함.</p>	<p>김 일 증</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p>
<p>박 중 호</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주택행정과 근무를 명함.</p>	<p>정 재 진</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박 기 덕</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개발 1 과 근무를 명함.</p>	<p>권 명 태</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p>

<p>최 성 오</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종로구 근무를 명함.</p>	<p>김 영 세</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최 오 근</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중구 근무를 명함.</p>	<p>김 영 호</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p>박 중 호</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박 남 수</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성동구 근무를 명함.</p>
<p>노 수 만</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관악구 근무를 명함.</p>	<p>무 대 영</p> <p>수출입관리실 지방행정 (근무부서직장) 주 사 보</p> <p>부직을 명함.</p> <p>녹지과 근무를 명함.</p> <p>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시보</p> <p>김 영 세</p>
<p>정 철 성</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마포구 근무를 명함.</p>	<p>김 실 국 장</p> <p>임용연기로 인하여 74.6.25 자 신규임용발령(발령제 576호)을 동일자로 취소함.</p> <p>시원회관장 실무를 명함.</p> <p>이 종 운</p>
<p>장 진 호</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용산구 근무를 명함.</p>	<p>안 환 희</p> <p>지방 부이사관</p> <p>시원회관장에 보함.</p>

서울특별시 부이사관 안관희  
(직위해제) 부직을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관리과 행정사무관 이철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1974. 6. 25.

대 통 령

지하철관리과인 시계장직무대리 행정사무관 이철우  
지방행정사무관에 입함.

4호봉을 급함.

지하철관리과 인사계장에 보함.

경기도내무국 세정과지적계장 지적기과 지종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정과

지적계장에 보함.

보건사회국 의약과장 의무기정 백용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74. 6. 25.

대 통 령

◎ 1974. 6. 28

행정권관(근부유직중)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전영문  
부직을 명함.

행정과 근무를 명함.

급 수 과 지방토목 기사보 정진호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동대문 지방토목 하동운  
수도사업소 기원보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동포구 지방전기원 김성환  
중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건축원 김성연  
중로구 근무를 명함.

구외정리1과 지방토목 강은순  
환지1계장 기과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 제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1974. 6. 29

조경과 지방건축사 정진환  
영동출장소 지방농림부 주한식

공원과 파견근무를 명함.

(74. 8. 15 까지)

◎ 1974. 7. 1

지방기계기원보시보에 입함.  
정구갑

1호봉을 급함.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박 홍 벽
	강 병 태	지방수의사보 시보에 입함.	
지방기계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1호봉을 급함.		가속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토목과(토목 시험소와전중) 지방토목 기사	한 국 영
	김 영 철	구회정리 2 과 근무를 명함.	
지방화공지원보시보에 입함.		성 북 구 지방토목 기사	최 식
1호봉을 급함.		토목과 근무를 명함.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토목 기사	천 해 봉
	형 용 인	토목과 근무를 명함.	
지방화공지원보시보에 입함.		도 가스사업소 지방토목 기사	홍 성 수
1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연로시험소 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방토목 기사보	안 기 환
건설부기간도 로건설사무소 토목기사보	강 재 열	구회정리 2 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		한강건설사업소 지방토목 기사보	윤 재 영
지방토목기사보에 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3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 지방토목 기사보	양 영 국
도봉구 근무를 명함.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박 남 수	새 걸과(적위해제중) 지적기사	홍 기 태
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입함.		부직을 명함.	
1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